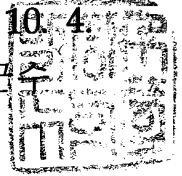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01
----------	------

제출일자 : 2018. 10. 4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군 내 근로자의 사기진작·자긍심 고취 및 최근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대구 달성지역 거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친밀감 개선 등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적용대상, 사업 및 예산 지원, 지원대상 기관·단체(안 제4조~제6조)
- 다. 포상(안 제7조)
- 라. 시행규칙(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100,000천원(세부내용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31. ~ 2018. 9. 20.(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제5조제1항 사업을 상시적·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포상)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

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기 간 : 2019년부터 연중 사업 실시

나. 주요내용 :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지역 적응과 화합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국내 및 국제의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경영·노동단체 간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가.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나. 국내·국제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사업

다. 경영·노동단체 간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라.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마.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관련조문

가.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 전부터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는 미반영, 2019년부터 신규로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비용만 추계

나. 추계 결과 : 100백만원

- 외국인노동자 화합 한마당 지원 : 50백만원(10백만원×5년)
- 달성 We-Together 페스티벌 지원 : 50백만원(10백만원×5년)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차현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외국인노동자 화합 한마당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달성 We-Together 페스티벌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